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403

발의연월일: 2025. 5. 8.

발 의 자: 박성훈·김형동·고동진

안상훈 • 이인선 • 박충권

김성원 · 이상휘 · 이헌승

김기웅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(화물운송주선업자)의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(국적선사)에게 지출한 해상 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%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국적선사 이용비용 40% 이상과 전년대비 국적선사 이용율 증가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세제혜택 요건 때문에 현 재 세제혜택을 받는 화주는 없으며, 이로 인해 국적선사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국내화주의 국적선사 이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본 특례의 공제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외항정기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40%에서 30%로 완화하고 물동량(TEU) 기준을 추가 및 직전 과세연도 대비 지출 비용 비율의 인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기업간의 상생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4조의30).

법률 제 호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의30제1항 본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 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100분의 40 이상일 것"을 "100분의 30 이상이거나 해상운송 물동량(TEU)이 전체 해상운송 물동량의 100분의 30이상일 것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04조의30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104조의30(우수 선화주기업 인 제104조의30(우수 선화주기업 인 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) ①「해운법」제47조 세액공제) ①-----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(「물류 정책기본법 | 제43조제1항에 따 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한다) 중 대통령 으로 정하는 기업(이하 이 조 에서 "화주기업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-----2028년 12월 31일까지 「해운법」 제25조제 31일----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"라 한다) 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 하는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100 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한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 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

등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 만,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.

- 1.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
- 2.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할 것 (생 략)
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	_	_	_	_	_	_	_	_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_	_	_	_	_	_	_													_	-	•		
1.	•	_	_	_															_	_	_	-	_
	_	-	-	-	-	_	-	-	-	_	_	_	_	_	_	-	_	_	_	_	-	_	_
	_	_	_	_	_	_	_	-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	_	-	-	_	_	_	_	_	_	_	_	_	_		1	0	0-	분		기		3	0
	<u> </u>	)	¿	} (	၀]	7	4	L	}		ਨੋ	<u>}</u>	싱	- (1	<u> </u>	걸	<u>&gt;</u>		듄	1	동	- 1	) 5
	(	Τ	È	IJ	J)	) (	)		て こ	] ;	체		ठें	)	스 C	]- <u> </u>	<u> </u>	. 건	<u>&gt;</u>	_	물	5	5
	Ţ	냥	0	]	1	0	00	눈	1	0		3	0	Ò	] -	싱	- ز	일		ズ	<u> </u>		
()	남			저	)>	>																	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